

# 2024년도 전라남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전라남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전라남도지사

## 1. 선발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 예정 직무	근무처
청원경찰	5명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대민업무 등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 기관·사업본부·사업소 [동부통합청사 포함]

## 2. 시험방법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1차 시험(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 택1형)

- 시험과목: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합격결정: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배수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다. 2차 시험(체력시험)

- 종 목: 악력,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각 10점)
  - 체력시험 4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40점)의 40%(1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은 모두 체력시험 합격자로 결정
  - ※ 총점 40점 중 16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 <불임1> 체력시험 기준 및 측정방법 참조

## 라. 3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5개 평정요소를 평가

평정요소	평정점수(100점)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2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 합격자 결정

- 면접 평정요소에 대한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100점)의 40%(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5개 항목 평가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40점 미만(총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바. 시험단계별 동점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는 모두 합격 결정
  - 동점자 결정은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3.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자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제한 없음

## 라.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마.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예) 1986. 11. 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광주광역시” 거주 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자격

-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본부[동부통합청사 포함] 등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시험일정				
	기간	방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 접수 및 취소기간 ' 24.1.29.(월) 09:00 ~ 2.2.(금) 18:00	인터넷 으로만 가능	필기시험	3. 6.(수)	3. 16.(토)	3. 28.(목)	
			체력시험	3. 28.(목)	4. 12.(금)	4. 18.(목)	
			면접시험	4. 18.(목)	5. 2.(목)	5. 14.(화)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문의처: 1522-0660)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 <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향후 시험단계별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자격 등 시험응시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 5. 가산특전

###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적용범위	비 고
<b>취업지원대상자</b>	10% 또는 5%		
<b>의사상자 등 대상자</b>	5% 또는 3%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b>자격증 (단·품증) 소지자</b>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4단 이상 소지자	5%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무도 2·3단 이상 소지자	3%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시험 단계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다. 의사상자 등 대상(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에 따라 시험 단계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대상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 및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자격증(단·품증) 소지자 가산(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단·품증) 소지 가산점은 자격증 또는 무도단증(2단 이상) 중 하나만 인정
- 무도 단·품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준용

※ <불임2> 무도분야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3. 15.)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4. 1. 29. ~ 3. 15.)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발급기관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를 입력
-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가. 시험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합니다.
- 나.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 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확인하며 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namdo.jeonnam.go.kr/sihum/>)의 시험정보-기타공고」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열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열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차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서류전형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 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자.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 차.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각종 카메라, 전산기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카. 체력시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여, 당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준용하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공고는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namdo.jeonnam.go.kr/sihum/>) 시험정보-기타공고」에 게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061-286-33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체력시험 기준 및 측정방법

### 가. 체력시험 기준(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비고

- 체력시험 4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40점)의 40%이상(16점) 득점한 사람은 모두 체력시험 합격자로 결정
- 총점 40점 중 16점 미만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나.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li> <li>○ 측정 단위: kg</li> <li>○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 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li> <li>○ 측정 기록 : cm</li> <li>○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 측정 기록: 회</li> <li>○ 측정 방법: 양 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ul>
왕복 오래달리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li> <li>-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li> <li>- 점증속도에 따라 올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li> <li>- 녹음 CD : 별도</li> </ul> </li> <li>○ 측정 기록 : 단위(회)</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li> <li>-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li> <li>-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li> <li>-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li> <li>-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li> </ul> </li> </ul>

## 붙임 2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